

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세정과

제정 2017· 6· 30 규칙 제599호
일부개정 2019· 1· 1 규칙 제645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22· 8· 11 규칙 제733호
일부개정 2024· 12· 10 규칙 제77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추천) 「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 1부.(별지 제1호서식)
2. 공적조서 1부.(별지 제2호서식)
3. 공적요약서 1부.(별지 제3호서식)
4. 현지조사 확인서 1부.(별지 제4호서식)

제3조(선정심의)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「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심의 의뢰 한다.

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 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성실납세자의 탈세·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⑤ 성실납세자 선정 수는 법인은 2개소 개인은 20명 이내로 한다.

⑥ 선정일 기준 3년 이내 경기도 또는 이천시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선

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4조(성실납세자 인증)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필증 수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2·8·11>

1. 인증서(별표 1)

2. 인증필증(차량용) (별표 2)

가. 개인은 본인 소유(운행권리가 있는 차량 포함)의 차량 2대에 한함

나. 법인은 법인이 지정하는 차량(운행권리가 있는 차량에 한한다) 2대에 한함

제5조(기록보존) 시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·1·1 규칙 제645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 생략

제6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⑨ 「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별지 1호서식 중 “세무과장”을 “세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⑩ 부터 ⑮ 까지 생략

부칙 <2022·8·11 규칙 제73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·12·10 규칙 제77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인 증 서 (제4조 관련)

제 호

성실납세자 인증서

주 소 :

성 명(법인명) :

귀 하(사)는 「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○
○○○년도 성실납세자(법인)로 선정되었기에 인증서를 드립니다.

년 월 일

이 천 시 장

직인

[별표 2]

성실납세자 인증필증(차량용)(제4조 관련)

이천시 성실납세자

차량번호 :

유효기간 : ~

위 차량은 「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」 제 7 조에 따라 이천시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차량입니다

년 월 일

이 천 시 장 (인)

○ 규격 : 가로 10cm × 세로 8cm

[비고] ① 재 질 : 종이

② 글 씨 : 궁서체·한글·검은색

③ 바탕색 : 흰색

※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9·1·1>

추 천 서 (제2조 관련)

성실납세자 인 적 사 항	주 소 (소재지)	
	성 명 (명 칭)	
	생년월일 (창립일)	
[공적개요]		
위 사람·법인을 년도 성실납세자(개인·법인) 선정후보자로 추천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 년 월 일 직한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 [추천관] 읍·면·동장 (세정과장) </div>		
이 천 시 장 귀하		
[구비서류] 1. 공적조서 1부. 2. 공적요약서 1부. 3. 현지조사 확인서 1부.		

[별지 제2호서식]

공 적 조 서 (제2조 관련)

(앞면)

성 명	(한 자)		성별	
생 년 월 일				
주 소				
직 업	소 속			
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				
공 적 요 지				
조 사 자				
소 속		직 위		
직 급		성 명		
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[추천관] 직위	성명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display: inline-block; padding: 2px 10px;">직인</div>		

(뒷면)

주요 경력 사항	
연월일	경력사항 상세
과거 포상 기록	
연월일	이 력
공 적 사 항	

[별지 제3호서식]

공 적 요 약 서 (제2조 관련)

소 속	직 위 급 (직 급)	성 명 (생년월일)	재직 기간	공 적 개 요

[별지 제4호서식]

현 지 조 사 확 인 서 (제2조 관련)

인 적 사 항	성 명 자 (한 자)	()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 화	☎		
직 장	직 장 명		전화번호	☎
	소 재 지			
	법인종업원수	명		
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				
지방세 체납여부				
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				
선정내용과 일치여부				
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년 월 일 </div>				
[현지 확인자] 직위		성명	①	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24. 12. 10>

선 정 심 사 기 준 표 (제3조제1항 관련)

성명(법인명) :					
구 분	성실납세자(법인)	성실납세자(개인)	평가 기간	배점	특점
계				100	
채납유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10건 이상(등록면허세,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)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- 7년을 소급하여 채납이 있는 경우 1년마다 2점씩 감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4건 이상(등록면허세, 주민세 개인분,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)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- 7년을 소급하여 채납이 있는 경우 1년마다 2점씩 감점 	7년간	40	
납세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인 :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- 기본 30점 + 10명 초과시마다 1점 추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액납세자 : 연 100만원 미만 - 기본 20점 + 5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○ 중간납세자 : 연 100만원 이상~1000만원미만 - 기본 20점 + 5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○ 고액납세자 : 연 1000만원 이상 - 기본 20점 + 50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	5년간 평균	40	
세 목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목당 1점 	좌 동	5년간	10	
납세기여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목조사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-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마다 2점씩 감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기타 유공 	5년간	10	

※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개인 4건 이상, 법인 10건 이상(등록면허세, 주민세 개인분,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 제외)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, 7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.

[별지 제6호서식]

수 상 대 상 명 부 (제3조제2항 관련)

위 원 장	인	부위원장	인
심사위원	인	심사위원	인
심사위원	인	심사위원	인
심사위원	인	심사위원	인
심사위원	인	심사위원	인
심사위원	인		

순 위	소 속	성 명 (대표자)	추천기관	비 고

